

의안번호	제 165 호
의결 연월일	2019. . . (제 회)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발의자	이상욱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19년 4월 9일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이상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
----------	-----

발의연월일 : 2019년 4월 9일
발 의 자 : 이상욱, 박상돈, 박형용,
심기보, 육미선, 최경천,
박문희, 이상식

1. 제안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실명제의 추진 동력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지정(안 제3조).
- 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 6조).
- 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32호
- 다. 협 의 :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 라.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정책 현안에 관한 사항
2.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3. 도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

4. 5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5. 1억원 이상 용역 및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6.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7. 충청북도민의 요청으로 공개가 필요한 사업
 8. 사업 담당부서의 장이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직 위원이어야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⑤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관리 및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내역서를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 과정, 변동사항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업무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해당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대립, 각종 정보의 유출 등이 우려되는 등 민감한 사정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정책실명제를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보고,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따른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관계법령 발췌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 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4(정책실명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업무개선 및 행정효율성진단)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기관의 행정 업무의 수행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행정업무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행정업무 수행의 절차와 방법, 수행체계 및 관련 제도 등을 분석하고 재설계하는 행정효율성진단을 하고 이에 따라 업무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단 등을 할 때에 제3항에 따른 행정효율성진단 결과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48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업무 재설계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2조에 따른 조직진단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효율성진단을 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능력을 가진 각급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함.

2. 비용 발생 요인

- 안 제6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의위원 참석수당

3. 관련조문

- 안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항
 -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 가. 재정수반요인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대한 수당 등 경비 지급
- 나. 추계의 전제 : 위촉직 위원 5명, 연 2회 개최(5명 x 150천원 x 2회)
- 다. 추 계 결 과 : ‘19년부터 향후 5년간 총 7,500천원 정도 소요가 예상되나 정책기획관실 위원회 POOL 수당을 활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예정으로 추가 예산 편성 요인 없음.
-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세 출	7,500	1,500	1,500	1,500	1,500	1,500
위원 수당	7,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정책기획관실 위원회 POOL 수당에서 지급(충북발전정책개발/도정참여제도운영/일반운영비)